

보도시점

배포 시

배포

2025. 8. 11.(월)

**“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, 고금리 등 어려움이
지속되는 상황에서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
분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합니다”**

- 최대 약 324만 성실상환자의 연체이력정보 공유·활용을 중단하여
신용평점 상승효과 및 금융거래 제약요인 제거 기대 -

- '20.1월~'25.8월 중 5천만원 이하의 연체(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)가 발생하였으나, '25.12월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, 연체이력정보 삭제
- 코로나19,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·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하였더라도,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,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'25. 9. 30.(잠정) 시행할 예정임
 - * 신용회복 지원대상은 '20. 1. 1.부터 '25. 8. 31.까지 소액(5,000만 원 이하)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'25. 12. 31.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
- '20. 1. 1.부터 '25. 6. 30.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약 324만 중, 약 272만이 현재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
 - 나머지 약 52만도 연체금액을 '25. 12. 31.까지 전액상환하는 경우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 가능
- 금번 조치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변제를 완료한 분들은 신용평점 상승으로 금리, 한도, 신규 대출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

참고1

신용회복 지원으로 인한 혜택 사례 (24년 당시)

1 (신규대출 성공) 50대 프리랜서 A씨

-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해 390만원 연체 후 전액상환했으나, 연체기록 때문에 시중은행 대출 불가
- 연체기록이 삭제되어 다른 금융사의 금리가 낮은 대출 신규신청

2 (카드거래 재개) 30대 창업자 B씨

- 새마을금고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 400만원을 연체 후 변제완료했으나, 연체기록으로 인한 낮은 신용점수로 모든 카드 거래정지
- 연체기록이 삭제되어 카드거래 재개

※ 신용회복 지원의 신용평점 상승효과 등('24년 당시)

- **개인**의 경우 전액상환을 완료한 자의 신용평점이 **평균 31점 상승**(653점 → 684점)
 - 20대 이하의 경우 40점, 30대의 경우 32점이 상승 ➡ 청년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
 - 신용평점이 상승한 개인들은 보유한 대출을 더 좋은 금리조건으로 변경하거나 **신용카드 한도금액 상향**이 가능하며 **신용카드 발급이나 신규대출도 가능***

* '24년 신용회복 지원조치 당시 실제로 약 2만6천명이 신용카드 발급을 받고 약 11만3천명이 제1금융권에서 신규대출을 받음

- **개인사업자**의 경우 신용평점이 평균 **약 101점 상승**(624점→725점)
 - 업종별로는 **제조업이 104점, 도·소매업, 숙박·음식점업 등이 100점**, 수리 등 서비스업이 **99점** 등 신용평점 상승 ➡ 전 업종에 걸쳐 유사한 **신용회복 혜택**

<연령별 개인 신용평점 상승효과>

구분	상승점수
20대 이하	40
30대	32
40대	29
50대	28
60대 이상	30
전체	31

<업종별 개인사업자 신용평점 상승효과>

구분	상승점수
제조업	104
도·소매업	100
숙박·음식점업	100
교육서비스업	99
예술·스포츠·여가업	100
수리·기타서비스업	99
기타	102
전체	101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	책임자	과 장	서나윤	(02-2100-2620)
	금융데이터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신용진	(02-2100-2623)

1.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금액을 5천만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는?

- ☐ 과거('21년, '24년 기준: 2천만원 이하) 신용회복 지원 당시 상황에 비해, 코로나19 관련 피해 연장, 고금리 상황 지속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이 중첩된 비상시기임을 감안
- ☐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 지원 기준(7년 이상, 5천만원 이하) 등도 감안하여, 성실(전액)상환자에 대한 기준 설정

2. 2020.1.1.부터 2025.8.31. 까지 연체이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나치게 긴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닌지?

- ☐ 동 기간 중 연체자의 약 80%는 지난해 신용회복 지원 이후('24.2월~) 발생
- ☐ 이에 더하여 과거 신용회복 지원조치* 당시에는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으나, 그 이후에라도 성실히 전액상환한 경우라면 재기의 기회를 부여

* 1차(21년) : 20.1월~21.8월 기간 중 연체발생자, 2차(24년) : 21.9월~24.1월 중 연체발생자

- 과거 조치 대상이 아니었던 2천만원~5천만원 구간 성실상환 차주 포함

3. 5천만원 기준은 대출 원금 기준인지? 아니면 연체한 금액 기준인지?

- ☐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(잔여대출 원금) 또는 CB사(잔여대출원금+이자)에 연체되었다고 등록하는 금액 기준임

4. 금융소비자가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지?

- ☐ 대상이 확정된 이후 CB사가 대상자여부 확인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임

※ 9.30일(잠정) 시행시부터 조회가능

5. 신용회복 지원으로 인해 금융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, 다음에도 신용회복 지원을 해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 아닌지?

- ☐ 연체를 최종적으로 전액 상환한 차주만을 신용회복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우려는 제한적임
- 아울러,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장기간 감내하는 않을 것이라 판단됨